#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신	
-1	
람	



제539호 2022. 9. 6.(화)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466호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회					
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466호

####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9. 6. 고 성 군 수

1. 조례명: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에 따라 시행한 「고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 행동강 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4조. 안 제13조의2)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관련 서식 삭제
  -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제9호서식·제19호서식 삭제

####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처: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 주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O 전화: (055)670-2076, FAX: (055)670-20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전화: 055-670-20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속된 기관의"를 "소속된 기관의"로,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 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제9호서식·제1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3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속		
<u></u>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소집 등, 6. 계약, 7.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징집,
	성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단체,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	드는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3호서식]	삭 제<2000.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4호서식]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업무 담당 공무원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b>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신청 원인	인 단체 등 체, 5. 자신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나 ,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저 난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 ~관계사업자, 7. 기타)	배직 법인	인 또는	: 단
참고 자료					
			년	월	일
○○기관	귀중	신고인	(서명	병 또는 '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4호서식] 삭 제<2000. 00. 00> (개정)	

		9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	칙[별지 제5호서식] 삭 제<2000.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6호서식]

###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소속			
282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b>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		
신청 원인	지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기관	: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	동강령 규칙[별지 제6호서식]	] 삭 제<2000.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7호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	직위(직급 )	
	연락처	
		. <b>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관련 사항	인 단체 등 5. 자신 5	다(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회[별지 제7호서식] <u>삭 제&lt;2000</u> .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8호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 • 운영ㅎ	하였던 사업 또	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1	,			1
		작성일자 : 20	0		

- 15 -

신고자 :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8호서식]	삭 제<2000.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9호서식]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	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워	Ol
딘	걸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	<b>라</b> 칙[별지 제9호서식] <u>삭 제&lt;2000</u> .	00. 00> (개정)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19호서식]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	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성명			연락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	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	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성명			연락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	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	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지	구동차 등 거래				
	성명			연락처	
거래 상대방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	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	- 몽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	<u> </u>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 거래워인이리		전당하게 하느 버	료 사의 위이 즈	※소명자 권원을 막한 반	<u>료 첨부</u> 성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
	, 계약을 합팔성 (		ㄹㅇㅋ 펀긴, 즉	cde 5≌.E	1롱지 또는 그 낚취 답할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19호서식]	삭 제<2000. 00. 00> (개정)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 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 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

② ~ ④ (생 략)

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 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 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공무원이 군수가 정하는 단 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 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 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조(공정한	지口스웨 Ó	케키노	7]
¶4幺(云/3 Yr	イナイツラ	애시는	$\sim$

개 정 안

에 대한 처리) ① ----------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 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 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 는 경우
-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u>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u> <u>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u> <u>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u>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u>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u> <u>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u>

<u>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u> <u> 상</u>

-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8.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 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9. 학연, 지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 우
-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 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 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11.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 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 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의 지정
- 3. 직무 재배정
-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 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 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 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 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 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 · 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 한다.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군수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삭 제〉

〈삭 제〉

-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 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군수는 자 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 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u> <삭 제></u>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군수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수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군의 퇴직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여 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 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 께 하는 행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관련자인 퇴직 자와의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정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 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	3조	의2	(직-	무권	한	등을	<u>-</u> 2	행시	-한	부	당
7	행우	리의	금기	()	공무	-원은	<u> </u>	<b>아</b> 신	]의	직	무
	권한	· 한을	행시	사하.	거니	· 지	위	・ス	ļ책	등	-에
,	서 -	유래	되는	: 사	-실건	y 6	향	력을	을 경	행시	하
(	여 1	다음	각	호	의 ㅇ	러느	하	나	Ì	해딩	하
-	는 .	부당	·한	행우	기를	해거	서는	. ပု	<u> </u>	틴디	

- 1. · 2. (생략)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속 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 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 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 위

〈신 설〉

〈신 설〉

〈신 설〉

भा 13	3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ઌૢૻ	생위의 금지)
_	
-	
-	
1.	· 2. (현행과 같음)
3.	
	소속된 기관
	의 전
	_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	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 나. 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
  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
  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u>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

	<u>게 협상에 뛰다 합기를 단상이</u>
	는 공직유관단체
5	

게 버런데 메리 어므로 고자되

5.	
	제4호 각 목의
	단체

<u>〈</u>삭 제〉

〈삭 제〉

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 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 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 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 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 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 다.

제22조(징계 등) ① · ② (생 략)

③ 군수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u>별표</u>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세22소(성계	등) ① ·	(2) (연	행과 -	살음)
③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찬반의경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스 거 기 ㅇ
	찬성	반대	<b>구경한</b>	수정사유